

 교육부		<h1>보도자료</h1>	
보도일시	2016. 12. 29.(목) 조간	담당부서	대학지원실 전문대학정책과
배포일시	2016. 12. 28.(수)	담당과장	최성부 (044-203-6411)
대변인실	044-203-6588	담당자	사무관 김수정 (044-203-6407) 주무관 정상현 (044-203-6408)

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

-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 졸업이수학점 학칙으로 제정
- 4년제 개편 간호학과에 학위심화과정(종전 3년제 졸업생) 개설 근거 마련
- 장애학생에 대한 학위심화과정 입학 제한 규제 해소

□ 교육부는 학사학위전공심화과정*(이하 학위심화과정이라 한다) 제도 개선을 위한 「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」을 입법 예고 (17.1.3~2.13)한다고 밝혔다.

* 근거 : 고등교육법 제49조 및 제50조의2, 전문대학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학사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을 설치·운영할 수 있도록 함

○ 이번 개정안은 대학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위심화과정의 운영 상에 나타난 일부 문제점 및 미비점을 개선하고 보완하기 위해 마련하였다.

□ 개정령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.

○ 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 운영에 대한 전문대학의 자율성이 부여되어 졸업이수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였다.

- 4년제로 개편된 전문대학 간호학과*에서도 학위심화과정을 개설** 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어, 종전 3년제 간호과를 졸업한 전문학사 간호사가 계속해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.

* 간호과가 설치된 86개 전문대학 중 81개 대학이 4년제로 개편

** 학위심화과정은 전문학사학위 모집단위를 근거로 개설 가능하며, 4년제로 개편된 학사학위 모집단위에서는 학위심화과정 개설 불가능

- 또한, 장애학생에 대한 학위심화과정 입학 제한 규제를 해소하여 장애인도 교육받을 수 있는 길을 열었다.

【개정안 주요 내용】

가. 학위심화과정의 이수학점 관련

- (종전)학위심화과정 이수학점 140학점 이상 학칙으로 정함

➔ (개선)이수학점 제한없이 학칙으로 정하도록 함

나. 4년제 개편 간호학과의 학위심화과정 개설 근거 마련

- (종전)학위심화과정은 전문학사학위 모집단위를 근거로 개설가능

➔ (개선) 종전 3년제 졸업생에 대한 학위심화과정 개설이 가능하도록 개정

다. 장애학생에 대한 학위심화과정 입학 제한 규제 해소

- (종전)장애학생과 일반학생 구별없이 전체 정원의 20% 범위로 제한

➔ (개선)장애학생에 대해서는 20% 범위 제한없이 입학이 가능하도록 개정

- 이준식 교육부 장관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“전문학사 졸업 간호사의 계속교육기회 확대로 직무수행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될 뿐 아니라 장애학생에 대한 학위심화과정 입학 제한 규제를 해소하여 장애 학생의 직업교육 기회를 부여할 수 있게 된다”라고 밝히며,

- 전문대학의 학위심화과정 이수 학점을 학칙으로 정함에 따라 전문대학에 자율성이 부여되는 만큼 교육부에서는 연차 점검을 통해 질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며, 각 대학에서도 학위심화과정 운영을 철저히 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.

붙임 :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공고문

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 김수정 사무관(☎044-203-6407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

[붙임]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령(안) 입법예고 공고문

● 교육부공고 제2016 - 호

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16년 월 일

교육부장관

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(안) 입법예고

1. 개정이유

전문대학 학위심화과정에 대한 졸업이수학점을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전문대학에 자율성을 부여하고, 4년제로 개편된 전문대학 간호학과에서 학위심화과정을 개설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

2. 주요내용

가. 학위심화과정 이수학점 자율화(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3 개정)

- 1) 학위심화과정을 통해 학사학위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140학점 이상 이수하도록 하고 있는 반면, 대학의 경우 졸업학점 및 학위수여는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있어 전문대학에 대한 형평성 문제 제기 및 자율성 저해

2) 전문대학 학사학위과정에서도 이수학점 제한규정을 삭제하고 학칙으로 정하도록 하여 전문대학에 대한 형평성 및 자율성 제고

나. 전문대학 간호학과 학위심화과정 개설 근거 마련(고등교육법 시행령 [별표1]개정)

1) 학위심화과정은 전문학사학위 모집단위를 근거로 개설가능하여 4년제로 개편*된 간호학과는 전공심화과정 개설 불가능하므로, 전문학사학위 모집단위를 근거로 하는 규정 삭제

* 간호과가 있는 86개 전문대학 중 81개가 4년제로 개편

2) 3년제 간호과 졸업생에 대한 계속교육 기회를 부여하여 전문학사 졸업 간호사의 직무수행 능력 향상에 기여

다. 장애학생에 대한 학위심화과정 입학 제한 규제 해소(고등교육법 시행령 [별표1]개정)

1) 4년제 대학의 학사학위과정, 전문대학의 전문학사학위과정의 경우 장애인은 특례입학을 통해 정원제한없이 입학가능하나,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경우, 장애인과 일반인 구별없이 전체 정원의 20% 범위로 제한함에 따라 장애인의 계속교육에 제한이 있음

2) 학사학위 전공심화과정의 특례입학을 통해 장애인에 대한 제한없이 입학이 가능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장애인에 대한 계속교육 기회 부여

라. 학위심화과정 등록 자격 법령 미비 사항 정비(고등교육법 시행령 제58조의4 개정)

1) 고등교육법상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는 자는 산업체 경력자 및 예외적으로 경력이 없는 자도 가능하나, 시행령상 등록자격은 산업체 경력자만 등록이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법과 시행령 상충

2) 상충된 법령 미비사항을 정비함

3. 의견 제출

이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월 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
나. 성명(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제출하는 곳 : 교육부 전문대학정책과

○ 전화 : 044-203-6407 (FAX : 044-203-6739)

○ 주소 :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
전문대학정책과(399-012)

○ 전자주소 : oppazoa@moe.go.kr

※ 참고로 입법예고 사항에 대하여 더 자세한 사항을 알고 싶으신 분은
교육부 홈페이지(<http://www.moe.go.kr>)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붙임 「고등교육법 시행령」 일부개정(안) 1부. 끝.

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8조의3 제3항 중 “학점은 학칙으로 정하되, 전문학사학위과정 이수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”를 “학점 및 학사학위 수여와 종류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”로 하고 제4항을 삭제한다.

제58조의4 제1항 중 “자의 자격은 제58조제2항에 따른다”를 “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”로 한다.

별표 1의 제7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[별표1]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

해당호	학년별·연도별 총학생수	모집단위별 총학생수
7. 제29조 제2항 제13호	제29조제2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의 연도별 총학생수는 해당 연도 입학정원의 100분의 20을 초과할 수 없다.	제29조제2항제13호에 해당하는 자의 모집단위별 총학생수는 해당 모집단위의 입학정원을 초과 (시행령 제29조제2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 제외)할 수 없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적용례) [별표1] 7호 정원 외 특별전형 총학생수 기준 개정규정은 2018학년도 입학전형부터 적용한다.

현행	개정안
<p>제58조의3(학위심화과정의 운영) ③ <u>학위심화과정을 이수하기 위하여 필요한 학점은 학칙으로 정하되, 전문학사학위과정 이수 학점을 포함하여 140학점 이상으로 한다.</u></p> <p>④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기준 외에 <u>학사학위 수여와 종류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</u></p> <p>제58조의4(학위심화과정의 등록 자격) ① 학위심화과정에 등록할 수 있는 <u>자의 자격은 제58조제2항에 따른다.</u></p>	<p>제58조의3(학위심화과정의 운영) ③ ----- <u>학점 및 학사학위 수여와 종류에 관한 사항은 학칙으로 정한다.</u></p> <p>④ 삭제</p> <p>제58조의4(학위심화과정의 등록 자격) ① ----- ---- <u>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이어야 한다.</u></p>

